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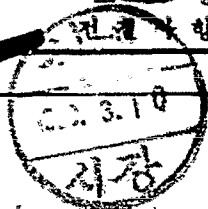


제1부시장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법무 181.6-281	전경 규정 (전화번호 75-6379)	  시
처리기간			
시행일자	80. 3.		
보존년한			

보조기관	제1부시장				
	기획관리관				
	법무담당관	법제국장			
기안책임자	이담주	80. 3. 5			

경유	과 안 참조				
수신					
참조					

**제 목** 서울특별시 국민(민영)주택사업계획 심의회 운영 규정중 개정규정

(제1안) 내부 결재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따른

신청 토지의 건축가능 적지여부 및 제반입지 조건을 일치위를 위하여 현행 과장급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등 심의회 위원을 과장급으로 승격시켜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 규정(안)과 같이 개정

로자 합니다.

**첨 부** :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. 기 정 안 각1부. 끝.

(제2안)

**수신** : 문화공보관

**제목** : 시보 게재

별첨 서울특별시 국민(민영) 주택사업 계획심의회 운영 규정중

개정 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.

**첨 부**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. 호 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주택행정과장

제목 : 훈령 발령

서울특별시 국민(민영) 주택사업 계획심의회 운영 규정중 개정  
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향에 착오 없도록 함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 끝.





# 개 장 이 유

주택건설 촉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토지의 건축 가능  
적지 여부 및 제반 입지 조건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 심의회를 운영하고  
있는데 그 구성원을 중간 관리층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구성, 효율적  
으로 차원 높은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심의를 하고자함.

## 주 요 내 용

구 분	현 행	개 장	비 고
1. 위원장	주택국장	제2부 시장	
2. 위 원	과장급 7인	국장급 10인	
3. 간 사	주택행정계장	주택행정과장	
4. 서 기	담당공무원	주택행정계장	

서울특별시 국민(민영) 주택사업 계획심의회 규정

운영 규정중 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

1970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장

정





서울특별시 국민(민영) 주택사업 계획 심의회 운영 규정중 개정 규정

서울특별시 민영주택 사업계획 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(1) 심의회는 위원<sup>30</sup>7인과 위원10인이내로 구성한다.
- (2)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되며 위원은 주택국장, 산업국장, 도시계획국장, 건축국장, 수도국장, 녹지국장, 하수국장, 비상계획관이 되고 필요시 위원장이 국장급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민영주택사업 승인과 관련된 법령의 종합검토
- 2. 건축 적지 여부 판단
- 3. 도시계획상 지상 유무
- 4. 토지 형질변경 가능 여부
- 5. 급수 가능 여부 판단
- 6. 군산보호구역 저촉 여부
- 7. 층고 조정 및 주위 건물과의 조화
- 8. 진입도로 연결 관계등
- 9. 기타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검토

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(1)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행정계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의 행	개 정
<p>제2조 (구성) (1)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한다.</p> <p>(2)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택행정과장, 도시계획과장, 도시계획 2과장, 구획정리과장, 녹지과장, 급수 과장, 비상계획보좌관, 농축과장이 된다.</p>	<p>제2조 (구성) (1) _____ _____ 10인의내로 구성한다.</p> <p>(2)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주택국장, 산업국장, 도시계획국 장, 건축국장, 수도국장, 녹지국장, 하수국장, 비상계획관이 되고 필요시 위원장이 국장급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.</p>
<p>제3조 (심의사항) 심의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시계획법등 반영주택사업 승 인과 유관한 법령의 종합검토</li> <li>2. 입지의 타당성 여부 의 검토</li> <li>3.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사업계 획의 검토</li> </ol>	<p>제3조 (심의사항) — 과 동 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반영주택 사업 승인국 관련법 령의 종합검토</li> <li>2. 건축 적지 여부 판단</li> <li>3. 도시계획상 지장 유무</li> <li>4. 토지 형질변경 가능 여부</li> <li>5. 급수 가능 여부 판단</li> <li>6. 군사보호구역 저촉 여부</li> <li>7. 층고 조정 및 주위 건물과의 조화</li> <li>8. 진입도로 연결 관계등</li> <li><del>9. 반영주택사업 승인 구역의 경</del></li> <li>9. 기타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 특면에서 검토</li> </ol>

제6조 (관사 및 서기) (1) 심의회에 관사와 서  
기 각 1인을 두되 관사는 주택행정계장이  
되고 서기는 관사가 담당공무원중에서 임  
명한다.

제6조 (관사 및 서기) (1) — —  
— — — — — 주택행정과장이  
되고 서기는 주택행정계장으로  
한다.